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15.0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용고사 및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와 방법 확정 및 이행
2. 대입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의견 개진 및 출제문제 분석
3. 향후 대입전형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상정
4.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향후 입학전형 반영 계획 포함)
5.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향후 입학전형 반영 계획 공개
6. 기타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사항 개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입학관리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관리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입시공정관리위원과 외부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교사, 학부모)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130호 201505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